

# 워라벨일자리 장려금

소정  
근로시간  
단축제

## 사업 개요

- 근로자가 가족돌봄,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

## 지원 대상

-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사업주

## 지원 요건

- ①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
  - 취업규칙 등에 단축제도 도입
  -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~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
  - 전자·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
  -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)
  - 최소 1개월 이상 활용
- ②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
  -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~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
  - 연장근로 제한
  - 최소 2주 이상 활용

## 지원 내용

- **지원액**: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
  - 장려금: 월 최대 30만원
  - 임금감소액보전금: 월 최대 20만원
    - \*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
- **지원인원**: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% (최대 30명 한도)
- **지원기간**: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, 3개월 단위 신청

##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·활용 ➡ 지원금 신청 (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) ➡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)

# 워라벨일자리 장려금

실  
근로시간  
단축제

## 사업 개요

-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
  - \*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 등 포함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

## 지원 대상

-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사업주

## 지원 요건

- ① **계획수립**: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\* 수립
  - \*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,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, 구체적인 단축 계획(교대제 개편, 연장근로 관리방안, 연차제도 활성화방안 등), 향후 지속 방안
- ② **실근로시간 감소**: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
- ③ **근태관리**: 전자카드, 지문인식, 타임레코드 등 전자·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·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

## 지원 내용

- **장려금**: 월 30만원(지원 인원 1인당)
- **지원대상자**: 사업참여 전부터 단축시행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중인 피보험자
  - \*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
- **지원인원**: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% (최대 100명 한도)
- **지원기간**: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, 3개월 단위 신청

##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사업계획서 제출(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) ➡ 심사·승인(고용센터) ➡ 실근로시간 단축 ➡ 지원금 신청(고용24) ➡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)



www.worklife.kr

# 2025

## 기업 인건비 등 지원제도 일·생활 균형관련





# 유연근무 장려금



# 일·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


#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



**사업 개요** ●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

<b>재택근무</b>	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
<b>원격근무</b>	주거지,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
<b>사차출퇴근</b>	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
<b>선택근무</b>	1개월(산상품·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)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

**지원대상** ●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사업주

**지원 요건** <공통>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, ②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·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, ③ 전자적·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·관리  
<선택근무제>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, ②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, ③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
<사차출퇴근> 육아기(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

**지원내용** ●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

유형	1개월 지급액		
재택·원격 근무	15만원 (월 4일~7일 활용)	20만원 (월 8일~11일 활용)	30만원 (월 12일 이상 활용)
육아기 사차출퇴근	-	20만원 (월 6일~11일 활용)	40만원 (월 12일 이상 활용)
선택근무	30만원(월 6시간 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		

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·원격·선택근무는 지급액의 2배를 지원

● 직전년도 말 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%(최대 70명 한도)

**지원절차 및 신청방법** 사업계획서 제출(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) ➔ 심사·승인(고용센터) ➔ 유연근무 도입·활용 ➔ 지원금 신청(고용24) ➔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)

**사업 개요** ● 기업의 일·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

**지원 대상** ● 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
**지원 요건**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·승인  
②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·취득하는 프로그램·시설·장비 지원  
③ 지원 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

**지원 내용** ① **재택·원격근무, 일생활균형 우수기업** 근태관리시스템+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의 50%(재택·원격근무), 80%(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)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
② **유연근무(재택·원격·사차·선택·근로시간 단축) 인프라**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(사업주 투자비용의 70% 범위 내 최대 750만원 지원)

종류	지원 시스템 예시	지원방식
유연근무(근로시간 단축)	근태관리 시스템 - 그룹웨어, ERP, 출·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(인사 노무관리 프로그램,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, 출 퇴근 기록 장비 등)	설치비 또는 사용료
재택·원격 근무혁신	보안시스템 - VPN, 원격접속, 정보 유출 방지, 자료 백업 및 복구,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	

■ PC·노트북 등 통신장비, 건물·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

**지원절차 및 신청방법** 사업계획서 제출(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) ➔ 심사·승인(고용센터) ➔ 인프라 구축 ➔ 지원금 신청(고용24) ➔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)

**사업 개요** ●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,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,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(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컨설팅 포함)

**신청 대상** ● 20인 이상 사업장

**지원 내용** ● **지원내용** :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택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진단·전문·특화로 구분, 맞춤형 컨설팅 제공(유연근무 컨설팅은 진단+전문으로 진행)  
① (진단)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진단,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 
② (전문) 실태 설문 조사,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 지원  
③ (특화) 사회적 이슈 대응,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 
● **비용** : 무료(단, 기업 규모 및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일정 비용 자부담)

**신청 방법**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플랫폼(<http://kwpi.or.kr>) 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하기

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 등 우수 기업은 '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'으로 선정해서 세무조사 유예, 신용·기술 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 제공